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7일, 백승아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승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게다가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는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사와 관련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되어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가건강검진 실시기관이라면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에서는 더 이상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학생은 기존에 주치의 병원으로 이용하던 곳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초1·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만이 아닌 여타 건강검사까지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신체 발달상황검사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정신건강검사 등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경비 보조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지출액이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예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